국민동의청원서

등록일자	2023. 10. 3.		
동의기간	2023. 10. 4. ~ 2023. 10. 12.	국민동의 수	50,000
청 원 자	성 명 최재혁		
제 목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청 원 원 문

[청원의 취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해 현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차입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청원 내용]

1.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

현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지 차입 공매도만 가능토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임. 왜냐하면, 시스템상 근원적으로 차입이 불가능하면,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임. 이로 인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식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함. 따라서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기관·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현 자본시장법은 기관·외국인의 경우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따라서 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기관·외국인 등의 경우 수익이 날 때까지, 즉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없애준 격으로 개인투자자와 크게 차이가 있음. 또한, 이러한 무기한 차입 공매도는 우량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을 일정기간(예, 3개월 또는 6개월/연장은 불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